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요구·통보

제 목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 과다 집행 등 업무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울주군

내 용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부유차단막 또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해양공간에서의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오염물질이 퇴적된 해역에서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등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과, 동구, 북구, 울주군)에서는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 해양 정화비용 절감 등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조보조금(국고보조율 50%)을 교부 받아 아래 [표1]과 같이 매년 ‘바다속 폐기물 수거,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1] 2017년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수거실적(ton)	추진방법 및 주체
계	830	1,661	
바다 속 폐기물 수거	200	110	수중전문 민간단체 (○○○○과)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450	1,270	연안쓰레기 수거(구, 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180	281	폐어구 등(○○수협 민간위탁)

* '18년도 사업 : 882백만원(국비 90, 시비 496, 구·군비 296) / 해양폐기물 1,260ton

※ 울산광역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1.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 집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게 감독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방법 및 확인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해양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별 폐기물 종류에 따른 처리단가를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등에 고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고시 단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견적서 등을 받아 이를 비교 검토하여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폐기물처리에 있어 울산광역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시단가 또는 견적서 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견적서를 근거하여 체결한 계약단가를 살펴보면 매년 처리하는 해양쓰레기의 종류는 유사하나 사업별, 시·군·구청 소재 업체별 단가가 '17년도의 경우 톤당 약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거래실례가격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이에 대해 위 관서에서는 폐어구 등의 비중이 적어 처리량 대비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해양쓰레기의 처리를 꺼려하여 고시단가를 적용할 경우 계약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관내 폐기물업체별 계약단가를 살펴보면 '15년~ '16년까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단가는 고시단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결과적으로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의 폐기물처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시단가 또는 견적서 등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물 업체의 견적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총 29,898천원 상당액의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년도별 해양 쓰레기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단가 비교 내역

사업별	구분			실제 지출된 예산(견적서)		고시단가 적용 산출		차액 (원)		
				처리량 (톤)	지출된 비용 (원)	운반·처리 단가 (원/톤)	산출 비용 (원)		운반·처리 단가 (원/톤)	
총계								29,898,382		
① 해양 쓰레기 처리 지원 사업 (구군)	총 계			522.23	157,306,400	-	135,727,577	-	21,578,823	
	동 구	2015년	48.28	19.71	6,919,000	313,190 (폐합성수지)	12,547,972	259,900	791,028	
				3.57		209,000 (페그물)				
				13		3,520,000				270,769
				12		2,900,000				241,666
		2016년	84.39	40	12,300,000	307,500	21,932,961			
				14.39	4,410,000	306,462				
				30	9,000,000	300,000				
		2017년	36.85	34.2	12,500,000	365,497	9,577,315			
	2.65			1,400,000	558,000	4,322,685				

	북 구	2015년	66.67	18,000,000	270,000	17,327,533	259,900	672,467
		2016년	91.25	26,950,000	295,370	23,715,875		3,234,125
		2017년	60.61	18,400,000	303,600	15,752,539		2,647,461
	울 주 군	2015년	12	3,309,240	275,770	3,118,800	259,900	190,440
		2016년	63.68	18,276,160	287,000	16,550,432		1,725,728
		2017년	58.5	19,422,000	332,000	15,204,150		4,217,850
②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수협)	구분		실제 지출된 예산		물가정보지 적용 산출		차액	
		처리량 (톤)	지출된 비용 (원)	운반·처리 단가 (원/톤)	산출 비용 (원)	운반·처리 단가 (원/톤)	(원)	
	총 계		777.57	206,821,767	-	202,090,443	-	4,731,324
	동 구	2015년	95.41	20,990,200	220,000	24,797,059	259,900	-3,806,859
		2016년	221.59	52,899,057	240,000	57,591,241		-4,692,184
		2017년	177.71	58,232,510	330,000	46,186,829		12,045,681
	북 구	2015년	69.87	15,002,210	220,000	18,159,213	259,900	-3,157,003
		2016년	109.62	25,585,690	240,000	28,490,238		-2,904,548
		2017년	103.37	34,112,100	330,000	26,865,863		7,246,237
③ 바다속 폐기물 수거 사업 (본청)	구분		실제 지출된 예산		물가정보지 적용 산출		차액	
		처리량 (톤)	지출된 비용 (원)	운반·처리 단가 (원/톤)	산출 비용 (원)	운반·처리 단가 (원/톤)	(원)	
	총 계		92.35	27,590,000	-	24,001,765	-	3,588,235
	울 산 시	2017년	92.35	27,590,000	298,754	24,001,765	259,900	3,588,235

※ 울산광역시 ○○○부 제출자료 재구성

2.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 관리 감독 개선필요

한편 위관서(동구, 북구, 울주군)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연안쓰레기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목적상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 투입된 인력(수량)의 객관적인 증빙 및 확인이 이루어진 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연안쓰레기 수거 사업의 경우 약 21km에서부터 60km 까지 관내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함에 따라 구청 등 청사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직접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근로자에 대한 출근부 등 근태 등을 확인한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출근부를 양식에 따라 일괄 표로 작성하거나 서명 또는 직인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매 월말 근무 일자에 맞추어 일괄 서명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객관성을 담보하지 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사진] 연안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 근로자 출근부 사본

“삭제”	“삭제”
수기 출근부	

※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울주군 제출자료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연안쓰레기 수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 및 과업수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관리방법을 강구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는**

[주의] 해양쓰레기의 폐기물처리 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고시단가 또는 시장 조사 가격 등을 비교 검토 후 적정단가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조금이 과다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

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는

[통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객관적인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인력관리 및 보조금 집행에 있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